

2017학년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

01 모집정원

모집정원은 남녀 구분없이 100명(학급당 20명, 5학급)이며, **자기주도 학습전형**으로 선발함

전형 구분		모집 인원
정원 내 모집 (5학급, 100명)	자기주도학습 전형	100명 ※사회통합 전형 20명 (모집 정원의 20%) 포함
정원 외 모집	국가유공자자녀 전형	3명 이내 (모집 정원의 3% 이내)
	특례입학 전형	2명 이내 (모집 정원의 2% 이내)
	특수교육대상자 전형	약간 명

02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

내용	일시	장소 및 방법
온라인 입력	2016.08.16.(화) 09:00 ~ 08.19.(금) 17:00	http://www.jinhakapply.com/ (교사추천서 : 2016. 07. 04.(월)부터)
서류접수	2016.08.16.(화) ~ 08.22.(월)	우편 접수(제출)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서류평가	1차 서류 평가 2016.08.31.(수) ~ 09.23.(금)	본교 지정 장소
	개별 면담 2016.10.04.(화) ~ 10.28.(금)	
	2차 서류 평가 2016.09.28.(수) ~ 11.04.(금)	
소집면접 대상자 발표	2016.11.16.(수) 17:00	http://www.jinhakapply.com/
면접 대상자 예비소집	2016. 11.17.(목) 14:00	본교 강당
소집 면접	2016. 11.19.(토)	본교 지정 장소
최종 합격자 발표	2016. 11.25.(금)	http://www.jinhakapply.com/

※ 전형료 결제 :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결제(신용카드, 가상계좌), 전형료 : 30,000원

※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(단, 서류평가 불합격자는 10,000원을 반환함)

03 지원자격
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수학·과학 분야에 높은 열정과 성장 가능성,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
구분	지원 자격	
공통	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.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.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4.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)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5. 타 시·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(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) (조기)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6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 1항 및 「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」 제4조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* ※ 위 2~5항의 '경기도에 거주하는 자' 라 함은 '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(보호자 포함)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자' 를 의미한다.	
사회통합 전형	다음 1, 2 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본교에서 수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 1. 기회균등 대상자 2. 사회다양성 대상자(소득 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 자녀에 한함)	
정원 외 전형	국가유공자 자녀전형	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(법정대상자로서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함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	특례입학 전형	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.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.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.) 나.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. 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.) 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
	특수교육 대상자 전형	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①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(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여부는 경기도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하는 사항임)

*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: 경기도교육청 「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시행지침」에 따른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

04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온라인 입력	등기우편 제출
공통	- 입학원서 1부 (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지원자와 보호자 및 담임교사의 서명 후 등기우편 제출)	○	○
	- 자기소개서 1부	○	
	- 교사 추천서(수학 교사 또는 과학 교사 추천서) 1부	○	
	- 학교생활기록부 II (수상기록제외(고입용),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원점수/ 표준편차 제외(고입용), 영재기록사항 제외(고입용)) 1부 ※ 단면인쇄, 간인, 원본대조필(교감 또는 3학년부장), 학교장 직인 필수 ※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는 최종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		○
	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		○
졸업자	- 졸업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		○
고입검정고시 합격자	- 고입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- 고입 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		○
조기졸업예정자	- 조기졸업(예정)증명서(본교 소정 양식)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		○
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	- 상급학교조기입학대상자증명서(본교 소정 양식)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		○
사회통합 전형	-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 1부 (본교 소정 양식) - 주민등록등본 1부 - 가족관계 증명서 1부 (등본상 부, 모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포함) -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각 1부 <표 1> 참조		○
정원 외 전형	국가유공자 자녀전형	- 관할 국가보훈지청장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	○
	특례입학 전형	- 특례입학신청서 1부(본교 소정 양식) -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- 국내 최종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 1부 - 제3국 수학 인정서 1부 - 재외국민등록부 등본(본인, 부, 모) 각 1부 - 출입국 사실 증명서(본인, 부, 모) 각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	○
	특수 교육 대상자 전형	- 201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계획에 제시된 일체의 서류	○

※ 유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
(단, 특례입학대상자와 고입 검정 고시합격자의 자격 검증 관련 서류 제외)
-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
- 등기우편 제출 서류는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,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
- 서류 제출 시 기재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고, 간인, 원본대조필(교감 또는 3학년부장), 학교장 직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
- 교사 추천서의 작성은 해당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며, 배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재작성 하도록 통보함
※ 해외에서 9학년(18학기)을 마치고 지원하는 학생과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
 - 지원자가 재학했던 국내의 초등학교, 중학교의 교사 추천 가능
 - 지원자가 다니는 국내의 종교기관 지도자
 - 국내의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전문상담가 등
(단, 학원 강사 등 사교육기관 관계자, 지원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)

표1: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

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 공통 제출 서류	- 주민등록등본 1부 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1부(등본상 부, 모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로 반드시 제출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2017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및 2,3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 지원 자격 적용 기준(소득분위 8분위 이하)은 본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

선발 순위	지원 자격	제출 서류	
1순위 (기회균등 대상자)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	- 수급자 증명서 1부	
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(법정 차상위 계층)	차상위 자활대상자	-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
	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	-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		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	-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
		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	-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
		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	- 우선 돌봄 대상자 확인서
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(구, 차상위계층)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/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구, 차차상위계층)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	지역건강 보험료
	직장건강 보험료		- 건강보험자격을실확인서 1부 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(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)
	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	교육지원대상자	-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
		기타국가보훈대상자 (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)	-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	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1부	
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(사망자 또는 실종자)의 형제·자매·자녀(손자녀 포함) 중 2014.4.16. 현재 중학교 재학생 (▶2017학년도 고입 전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)		- 학교장 확인서 1부 -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	
학교장 추천 학생 ※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 (구, 차상위계층),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 (구, 차차상위계층) 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 ※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※ 선정 예시 -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-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- 부양 의무자가 질병·사고·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		-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- 객관적 증빙서류 또는 위원회 의견서 1부 ※객관적 증빙서류의 예 - 실질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 통지서, 법원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지역 건강보험료 영수증, 급여 명세서, 병원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,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	

2, 3 순위 (사회다양성 대상자) 공통 제출 서류	소득 8분위 이하 증빙 서류	
	지역건강보험료	직장건강보험료 또는 혼합(지역+직장)
	- 건강보험자격을실 확인서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(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) (영수증, 고지서, 납부확인서 중 택1)	- 건강보험자격을실확인서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(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) (영수증, 고지서, 납부확인서 중 택1)

선발 순위	지원 자격	제출 서류
2순위 (사회다양성 대상자)	소년소녀가장(형제·자매 포함)	-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)
	조손가정 학생	-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)
	북한이탈주민 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해당자)	-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(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)

2순위 (사회다양성 대상자)	순직군경자녀, 순직소방대원 자녀, 순직교원자녀	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1부 - 순직확인서 1부
	다문화가정 자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해당자)	- 가족관계증명서 1부(혼인관계증명 포함) - 국적취득증명서(국적 취득 시) 또는 여권 사본(국적 미취득시) 1부 - 외국인 등록 증명서 1부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
	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(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)	-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
3순위 (사회다양성 대상자)	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 (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)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(학생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)	- 현 재학 중학교의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-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
	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(첫째 자녀부터 가능)	- 가족관계증명서 1부
	준사관/부사관 자녀	- 재직증명서 1부(총 재직기간 명시)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	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(2016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)	- 현 재학 중학교 최초 전입일 또는 입학일자가 명시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-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
	산업재해근로자 자녀	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(근로복지공단)
한부모 자녀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1호~5호 해당자)	- 가족관계증명서 1부	

05 전형별 세부사항

[일반전형]

1. 모집정원: 80명
2. 전형요소: 학업소양, 탐구력, 핵심인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성 평가
3. 전형방법: 서류 평가와 개별 면담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집 면접 대상자로 2배수(160명) 내외를 선정한 후 소집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함

가. 1단계

- 자기주도학습역량과 학습 잠재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
- 자기 소개서, 교사 추천서,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과 학생 및 교사 면담을 통한 진위 확인 및 추가 자료 확보 후 서류에 대한 심층적 종합 평가로 소집 면접 대상자 선정
- 교과성적 반영 :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최근 4학기의 수학·과학 성적(성취도 및 수강자 수만)을 반영

반영 교과목	반영 학기
수학, 과학	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자유학기를 제외한 최근 4학기 성적 *3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

※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

- ① 올림피아드(KMO 등), 교내·외 각종대회 등 입상 실적,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
- ② 부모의 사회·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
예)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, 소득수준, 고비용 취미 활동(골프, 승마 등),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 (사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) 등
- ③ TOEFL·TOEIC·TEPS·TESL·TOSEL·PELT, HSK,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, 한국어(국어)·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

※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

- ①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(공과 끼 영역)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※ 대리작성,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
- ② 본문에 수학 등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시험(점수), 올림피아드(KMO 등)·경시대회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적 기재 시 해당 전형 단계의 최하 등급 처리
- ③ 부모(친인척포함)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내용 등 기재 시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 처리
※ 최저 등급자의 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는 최하등급으로 처리

※ **교사 추천서 작성 시 배제 사항**

- ① 올림피아드(KMO 등), 학교 내·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, 영재교육원교육 및 수료 여부 등
 - ② 부모의 사회·경제적 지위 암시내용, 개인 정보 관련 사항 등
 - ③ 학생의 교과 성적, 각종 인증시험 점수, 한국어(국어)·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등
 - ④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
- ※ 위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중학교에 다시 작성하도록 통보 (해당 중학교에서 불응하는 경우 당해 학생은 전형 대상에서 배제)

나. 2단계

· 소집 면접 대상자를 본교로 소집하여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함

다. 서류 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선발

[사회통합전형]

1. **모집정원:** 20명
2. **전형요소:** 학업소양, 탐구력, 핵심인성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성과 잠재성 평가
3. **전형방법:** 일반전형의 전형방법과 동일하며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선발

가. 1단계

- 1)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(40명)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.
- 2)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2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를 선발한다.
- 3)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.

나. 2단계: 면접을 실시한 후 서류평가와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20명 선발

- 1)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로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60%(12명)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.
- 2)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 탈락자, 2,3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.

다.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.

[정원 외 전형]

1. **특례입학전형(정원의 2% 이내 선발 - 2명 이내)**
서류 평가 및 소집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수학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선발
2. **국가유공자자녀전형(정원의 3% 이내 선발 - 3명 이내)**
서류 평가 및 소집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수학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선발
3. **특수교육대상자 전형(약간 명)**
평가 및 면접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실시하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의 수학능력을 판단한 후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 소속 중학교에 송부함. 최종 배치는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함

06 기타 사항

1. 온라인 원서 접수 후 제출서류를 반드시 본교에 등기우편 접수하여야 함
2.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

- ※ 이중지원 금지 :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곳만 지원 가능
- 과학교, 외교, 국제고, 자율형 사립고 등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자는 전형 날짜가 달라도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교에만 지원이 가능함.
 - 전기고등학교 합격 시 후기고등학교(일반고, 자율형 공립고 등) 지원 불가

3.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 4.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날짜까지 합격자 등록을 해야 함
 5. 입학 전형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
 6. 본교 합격자는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※ 기타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, 관련지침 및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함